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65호
2020.7.13

정책동향

- ▣ '그린 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
- ▣ 노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마련 필요

산업정보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설기업 대응
- ▣ 일본의 건설기능인 교육훈련 체계 혁신

건설논단

- ▣ 흑시나와 역시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그린 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

- 단발성·선언적 발표로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이고 체계적 정책 뒷받침돼야 -

■ 그린 뉴딜 정책의 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2020년 5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디지털 뉴딜)을 발표함. 그 이후 5월 20일에 ‘그린 뉴딜’이 새롭게 포함됨.
 - 그린 뉴딜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위기 극복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Win-Win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20년 6월 3일 발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그린 뉴딜’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 건축물 및 공공 임대주택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R&D 예산을 포함함.
 - 공공 건축물 대상 건축물은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1,085동임. 이들 건축물에 대해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 시스템 보강 등을 수행하고자 하며, 예산 규모는 1,992억원임.
 - 공공 임대주택 대상 건축물은 경과 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영구·매입 임대주택 1만 300호임. 이들 대상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시설 성능 향상 등을 수행하고자 하며, 예산 규모는 360억원임.
 - 정부는 상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자재·설비, 인테리어 등 관련 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함.

<표 1> 3차 추경안에 포함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개요

사업명	대상 건축물	예산(안)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1,992억원
공공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경과 연수 15년 이상 노후 영구매입 임대주택 1만 300호	360억원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6.3),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 내용.

■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현황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7조를 근거로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온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노후 건물 현황 평가와 설계 컨설팅

팅 등을 수행하며, 2013~2019년 총 130개소를 지원함.

- 민간부문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비의 이자비용(이자 지원율 : 1~3%)을 지원하며, 2014~2019년 총 4만 100건이 시행됨. 다만, 민간부문의 그린 리모델링 시행 지원 건수가 사업 초기 대비 증가하고 있지만, 창호 성능개선 위주의 소규모 공사 중심으로 진행되기에 건설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성에는 한계가 있음.

■ 시사점

- 이번 3차 추경예산에 그린 뉴딜 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그린 리모델링 관련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 및 운용 방안은 미비한 상황임. 그린 뉴딜 정책이 선언적 발표 또는 단발성 과제가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린 리모델링 대상 범위 측면) 건설부문에 해당하는 그린 뉴딜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 특히 공공 건축물의 운영 단계로 한정하고 있음. 즉,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그린 뉴딜(그린 리모델링) 예산은 공공 건축물(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및 공공 임대주택 1만 300호 대상)로 한정하여 계획되어 있음.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한 건설산업 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세제 혜택, 규제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린 리모델링의 효과성 측면) 2013년 이후 2019년까지 공공·민간 4만 230건의 건축물 대상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추진됨. 하지만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및 평가는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따라 그린 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에 대한 스마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환경적 평가가 필요함. 이를 기반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 효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건축주 및 건설사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
 - (정책·제도 운용 측면) 국내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총괄은 LH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제도 및 지원 예산 운영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이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및 행정 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참여기업 확장 측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 및 정부 예산 규모 한계로 인해 소규모 공사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중·대규모 민간기업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사업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연계할 방안과 더불어, 기존의 중·대형 민간 건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리모델링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정광복(부연구위원 · kbjeong7@cerik.re.kr)

노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마련 필요

- 노후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

■ 주요 기반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의 유지관리, 성능평가 및 개선 의무 강화

- 금년 1월 1일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의 시행으로 주요 기반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들의 유지관리, 성능평가 및 개선 의무가 법정화되었음.
 -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7개 시설군 46개 시설물임.

<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요 기반시설물

구분	세부 시설물 내용
교통시설(8종)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공간시설(5종)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9종)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 체육시설(8종)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방재시설(8종)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3종)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5종)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정부 발표자료 p.2의 표 인용.

- 동 법률에 따라 관리 주체들은 관리감독기관장이 정한 ‘최소유지관리기준’ 과 ‘성능개선기준’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성능개선 투자 실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¹⁾

■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제도 구축이 필요한 상황

- 관리주체 입장에서 소관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재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설물별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법론을 갖추고 있어야 함.²⁾ 하지만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관리 주체는 거의 부재함.
- 관리 주체들이 적립해야 하는 총당금의 ‘조달 재원’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관리 주체가 연도별

1)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 제10조 내지 제13조의 내용을 참조.

2) 이때 각 관리 주체별로 산출한 금액의 수평적 비교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 산출 로직에 대한 관리 주체별·시설물별 표준화 작업이 미리 이루어져 있어야 함.

로 적립해야 하는 ‘총당금 금액의 크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기반시설관리법」 제23조에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① 기반시설 관리운영 수입금과 ②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 두 가지 재원만으로 적절한 수준의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또한 각 시설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총당금을 매년 어떠한 방식으로 적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참고로 현행 「기반시설관리법」상 시설물 재투자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금액이 각 관리주체가 설정하는 총당금액 크기와 연동되어 결정되는 특징이 있어,³⁾ 관리주체 입장에서 재투자계획 수립이 더욱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음.

■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 각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시설물 자산관리 시스템’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system)⁴⁾을 구축해 나가야 함.
 - 현재 정부에서는 「기반시설관리법」 대상시설물 중 일부인 15개 중요 시설에 대한 ‘인프라 총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동 시스템을 ① 전체 기반시설(15종 포함)의 관리가능 시스템으로 확장성 있게 개발함과 동시에, ② 동 시스템을 통해 각 관리주체들이 유지관리·성능개선 소요비용 추산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전략’ (유지보수 vs 성능개선)을 수립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지자체 등 관리주체들의 스스로 재정 여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총당금 적립 재원 및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지금 상태에서는 각 관리주체들이 소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성능개선에 소요될 비용의 크기를 추정하기 어려움. 때문에 우선 관리주체들로 하여금 시설 운영수입과 자체 회계 내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소관 시설물의 장부가액 중 일정 비율을 총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임.
 - ‘시설물 자산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관리주체들로 하여금 동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유지관리·성능개선 소요 비용 추정치를 토대로 각 시설물에 대한 ‘관리전략’과 투자 우선순위, 투자 규모, 그에 따른 총당금 설정 목표,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한) 투자계획을 자신들의 재정 상황과 연계해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임.

김정주(연구위원 · kjj@cerik.re.kr)

3) 「기반시설관리법」 제20조 제5항에서는 관리 주체가 스스로 적립한 성능개선 총당금액을 최대 지원 한도로 규정하고 있음.

4) 시설물 자산관리 시스템이란 시설물의 사용성 및 안정성 등 요구성능을 금전 가치로 평가하고, 동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 시점과 규모를 공학적으로 산출해주는 시스템을 말함. 이러한 시설물 자산관리 시스템은 주변 선진국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구축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안용환(2018. 9), 「구조물의 자산관리 기술개발 현황」, 콘크리트학회지 30(5), 한국콘크리트학회 내용 참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설기업 대응

- 기업 자체적 대응을 넘어 건설산업 참여자 간 협력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 코로나19 최초 발생 후 7개월 경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초 확인 후⁵⁾, 2020년 1월 20일 국내에도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최초 확인 기준 약 7개월, 국내 발생 기준 약 6개월이 경과한 현시점에도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지속되고 있음.
 -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全) 세계적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사망자는 50만명 이상으로 파악됨.⁶⁾ 국내의 경우는 2020년 7월 9일 00시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1만 3,293명, 누적 사망자 287명으로 파악되며, 최근 1주일 기준 하루 평균 약 5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코로나19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건설업계를 포함한 각 산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함.
 - 그간 국내 건설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극복을 위해 재무 및 경영 관리 측면에서는 리스크관리 강화, 현금 확보 확대, 사업계획 수정 등 각 기업에 적합한 비상경영 체제 또는 위기대응 계획 등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됨.⁷⁾
 - 더불어 현장 차원의 대응으로는 발주자 및 현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내 코로나19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현장 내 유입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관리 체계도 운영 중임.⁸⁾
 - 이러한 국내 건설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이 불분명하고 장기화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업들의 지속적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의 경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 팬데믹 현상으로, 글로벌 건설기업의 코로나19 대응 동향 파악을 통해 그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상대적으로 관리 역량과 여건이 부족한 중소 건설기업과 해당 기업이 운영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는 그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대처가 어렵거나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 중 이기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⁹⁾

5) 조선일보(2020. 07. 06), “WHO에 코로나 첫 보고, 중국이 한 게 아니었네”, 신문기사 참조

6) 헬스조선(2020. 06. 30), “WHO 코로나19 기원 조사, 다음 주 중국에 연구팀 파견”, 신문기사 참조

7) 건설경제(2020. 3. 20), “대형건설사,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비상경영 체제’ 가동”, 신문기사 참조

8) 건설경제(2020. 2. 21), “[건설업계 코로나 대응 비상체제] 코로나19 확산… 건설시장, 시나리오별 비상체제”, 신문기사 참조

<표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내 중대형 건설기업의 주요 대응 현황

건설기업 본사 주요 대응 현황	건설현장 주요 대응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경영 체제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투자 검토 및 리스크관리 강화 ✓ 원가 절감 등 현금 유동성 확보 ✓ 사업계획 재점검 및 개편 ✓ 건설현장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구축 ✓ 해외사업 선별 수주, 신사업 추진전략 점검 등 • 임원 급여 반납 • 순환 재택근무 • 위험지역 출장 제한, 출퇴근 시간 조정, 외부인 출입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현장 유입 금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책반 구성 ✓ 열감지 카메라 설치 ✓ 근로자 체온 체크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신규 건설근로자 채용 자제 ✓ 현장운영 중단 또는 폐쇄 등 • 코로나19 발생시 현장 대응책(비상관리 체계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과 지역 보건소 직접 연결 ✓ 지역 보건소와 현장 공동대응 체계 구축

■ 글로벌 건설기업, 자체 대응체계 구축과 더불어 산업 참여자 간 협력적 대응 추진

- 대표적 글로벌 건설기업인 Turner&Townsend, Skanska, Bechtel, Fluor 등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각 기업의 대응 방안은 크게 ① 경영진 및 전사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② 직원 보호 등 사무실 및 현장관리 강화, ③ 발주자 등 고객 지원 확대, ④ 상생협력 차원의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 지원, ⑤ 지역사회 지원 강화, ⑥ 정부 정책 제언으로 구분 가능함.¹⁰⁾
- 글로벌 건설기업은 전사 차원의 자체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은 물론 상생협력 차원에서 발주자 등 고객, 협력·공급업체, 지역사회까지 지원 중임.
 - 대표적 글로벌 건설기업인 Turner&Townsend, Skanska, Bechtel, Fluor 등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각 기업의 대응 방안은 크게 ① 경영진 및 전사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② 직원 보호 등 사무실 및 현장관리 강화, ③ 발주자 등 고객 지원 확대, ④ 상생협력 차원의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 지원, ⑤ 지역사회 지원 강화, ⑥ 정부 정책 제언으로 구분 가능함.¹¹⁾
- ① 경영진 및 전사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 글로벌 건설기업들은 각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은 물론, 최고경영자(CEO) 직속 대응팀 또는 본사 대응팀, 지역별 대응팀, 감염병 전문가 자문그룹 등을 구성·신설하여 운영 중임.
 - 일례로, Skanska는 영국에서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보건 및 안전 지침, 정부 등 관계기관의 지침, 일일 단위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한 자체 사업장 운영 조건을 수립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폐쇄 조치하고 있음.
- ② 직원 보호 등 사무실 및 현장관리 강화 : 앞선 전사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과 더불어 직원 보호 방안으로 재택근무, 자가격리, 이동 및 연락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교대 근무, 해외 출장 제한, 회의 및 컨퍼런스 참석 제한, 감독자 가이드라인 수립, 시스템을 활용한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 등의 대응책을 시행 중임.

9) TBS뉴스(2020. 2. 14), “열감지기도, 세면대도 없는 중소형 건설현장, ‘코로나19 비상’”, 신문기사 참조.

10) Turner&Townsend, UK Skanska, USA Skanska, BECHTEL, Fluor 홈페이지 참조.

11) Turner&Townsend, UK Skanska, USA Skanska, BECHTEL, Fluor 홈페이지 참조.

- ③ 발주자 등 고객 지원 확대 및 ④ 상생협력 차원의 협력·공급 업체 지원 : 기업의 내부적 고객인 직원을 보호하는 한편 외부 고객인 발주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전략적 파트너 관계인 협력업체나 공급업체 등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영국의 Consultancy 기업인 Turner&Townsend 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계약적 이슈에 대응하고 발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 및 조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헬프데스크(Contract Service help desks)를 주요 사업수행 국가인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중동 지역 등에서 운영 중임.
 - 또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인 협력업체나 공급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보건·안전·복지 이슈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조언을 수행 중이며, 폐쇄 예정 현장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빠르게 협력·공급 업체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⑤ 지역사회 지원 강화 및 ⑥ 정부 정책 제언 : 지금까지 살펴본 각종 코로나19 대응 방안 외에도 글로벌 건설기업들은 구호 물품 등의 전달을 통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에 코로나19 사태의 극복 및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는 등 사회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글로벌 건설기업들은 사업을 수행 중인 지역사회에 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구호 물품을 전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 중이며, Bechtel, Fluor 등은 지역 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구호금을 전달하는 재정적 지원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Bechtel은 정부에 ‘테스트 및 추적 기능을 활용한 안전한 작업장 복귀’, ‘공공부문의 수요(물량) 증대를 통한 민간부문 경기 위축 상쇄 및 고용 회복’, ‘인·허가 프로세스 간소화·효율화를 통한 민간부문 경기 활성화’ 등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건의함.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 참여자 간 상호 배려 및 지원이 필수적

- 전술한 바처럼 국내 건설기업은 자구적 노력을 통해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 중인 것으로 이해되나, 향후 장기화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참여자(발주자, 협력업체, 공급업체, 지역사회 등) 간 연계를 통해 협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
 - 국내외 건설기업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분석 결과, ‘전사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직원 보호’,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한 정책 건의’ 등은 공통으로 수행 중인 것으로 이해되나, 국내의 경우 발주자, 협력·공급업체, 지역사회 등의 상호 간 지원·연계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가 예상되기에, 향후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자체 대응을 넘어 발주자, 협력·공급업체 등 각종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 또한, 해당 과정에서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건설업계와 산업 참여자 간 연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산업계의 각종 건의사항이나 정책적 제안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광표(부연구위원 · leekp@cerik.re.kr)

일본의 건설기능인 교육훈련 체계 혁신

- ICT 기기를 활용한 직종별·수준별 교재 마련 및 무료 공개 -

■ 日 국토교통성, 건설 기능인의 직종별·수준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¹²⁾

-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설 장인의 기능을 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약칭 : 「건설 트레이닝」 사업)을 마련 및 공개함.
 - 「건설 트레이닝」 사업은 건설업 종사자 개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능·기술의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건설 재교육(recurrent training)의 일환임.
 - 「건설 트레이닝」 사업은 ‘후지 교육훈련센터’가 국토교통성의 위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교재는 사업자 단체, 건설기업, 교육훈련 기관 등의 감수를 거쳐 국토교통성이 직접 발행함. ¹³⁾

<표 1> 건설 기능 교육훈련 프로그램, 「건설 트레이닝」의 수록 내용

기초편 基礎編 (22)				주임(직장)편 職長編 (6)	
조경	造園	철근 시공	鉄筋施工	비계공	とび工
건축 판금 (외장 판금)	建築板金 (内外装板金)	콘크리트 압송 시공	コンクリート圧送 施工	형틀 목공	型枠大工
건축 판금 (덕트 판금)	建築板金 (ダクト板金)	방수 시공	防水施工	철근공	鉄筋工
냉동 공기 조화 장치 시공	冷凍空気調和 機器施工	수지 접착제 주입 시공	樹脂接着剤 注入施工	인테리어공	内装工
건축 목공	建築大工	인테리어 마감재 시공 (바닥 마감)	内装仕上げ 施工(床仕上げ)	도장공	塗装工
기와	かわらぶき	인테리어 마감재 시공(강철 기초)	内装仕上げ 施工(鋼製下地)	전기공	電気工
비계	とび	인테리어 마감재 시공(보드 마감)	内装仕上げ 施工(ボード仕上げ)	주임(직장)의 역할 (공통)	職長の役割 (共通)
석고	左官	도장	塗装	지도자 편 指導者編 (1)	
타일	タイル張り	기계 토공	機械土工		
배관	配管	압접	圧接		
거푸집 시공	型枠施工	외부 전문공	エクステリア専門工	지도자로서 적절한 지도 방법	指導者として適切な 指導方法

주 : 일본 건설 기능 교육훈련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있는 원문과 번역을 함께 수록함. 각 항목의 왼쪽이 번역, 오른쪽이 원문임.

12) https://www.mlit.go.jp/totikensangyo/const/totikensangyo_const_tk2_000111.html.

13) 후지 교육훈련센터(富士教練)는 직업훈련 법인인 전국 건설산업 교육훈련협회가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학교로서 건설기능자·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인터넷상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무료로 공개
 -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까지 수록하여 자세한 해설을 포함함.
 - 또한, 스마트폰 전용 앱(APP)도 개발하여 메모 및 책갈피 기능, QR 코드 등 ICT화된 교육훈련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기초편(22개 직종), 직장(주임)편(6개 직종+주임의 역할(공통)), 지도자편(지도자로서 적절한 지도 방법)을 각각 카테고리화하여 우선 제공하고 있음.

<그림 1> 건설 기능 교육훈련 프로그램, 「건설 트레이닝」 소개



자료 : 日 국토교통성, 토지·건설 산업국, 건설 시장 정비과, 홍보자료.

-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건설업 생산성 향상과 건설인력의 수급 실태 개선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action plan) 마련이 요구됨.
 - 범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된 직종별·수준별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훈련의 성과가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책을 준비해야 함.
 -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게 기존 교육훈련 내용 및 교재 등을 선제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산업 생산성 향상과 건설기능인의 처우 개선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방향성 제시뿐만 아니라 세부 실행 계획 마련이 긴요함.
 - 일례로 세부 실행 계획의 내용으로 ICT 기기를 활용하여 ① 보다 쉽게, ② 편리하게, ③ 교육훈련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④ 현장 통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⑤ 공공재(public goods)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건설기능인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이 절실함.

나경연(연구위원 · econa@cerik.re.kr)

흑시나와 역시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수능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20번의 시험을 치르고도 합격하지 못하고 21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수험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몇 가지 문제점이 떠오를 것이다. 첫째, 수험생의 잘못된 공부 방법을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험생이 가진 진짜 재능이 공부보다는 예·체능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만약, 수험생 본인이 앞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며 21번째 시험에는 붙을 것이라고 강변(強辯)한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대체로, 그 수험생은 처음부터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지난 6월 중순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요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6·17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대전, 청주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 발표한 20번의 부동산 대책과 맥을 같이하는 주택매매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파악된다. 이번 정책의 발표 전에 국민은, 그동안 지속된 주택매매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지속해서 올랐기에 ‘흑시나’ 이번에는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여 서울 등 주요 지역에 주택의 신규 공급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구입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서울살이 서민의 입에서는 ‘역시나’의 한탄만이 나올 뿐이었다.

많은 국민이 지적했듯이, 공급을 배제한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은 다른 부작용의 연결고리가

될 뿐이다. 다양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집값에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이는 정부 주택정책의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더불어, 시장은 주택매매 규제에 내성을 갖게 되고 규제의 효력은 더욱 짧아지게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악순환 고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지는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실시한 1, 2차 추경액은 24조원에 이른다. 또, 약 35조원에 이르는 3차 추경도 앞두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서울 집값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금과 SOC(사회간접자본) 보상금 50조 원도 올 하반기부터 시중에 풀릴 것이라 한다. 모두 109조원에 이르는 현금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는 셈이다.

1%대 은행 적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고, 주식투자 수익이 2,000만원 이상이면 약 30%까지 세금을 떼가는 정부의 ‘증권·펀드 양도차익 과세 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앞으로는 주식투자도 힘들어질 것이다. 국민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막아 놓은 상태에서 시중에 추가로 풀리는 109조원의 현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이다. 국민의 다수는 주택을 안전 자산으로 인식하며 요지에 주택을 보유하여 자산이 증식되길 원한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외면한 채 서울 등 요지에의 주택 공급을 계속 제한한다면 이는 기존 주택의 희귀(稀貴)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경기일보, 2020.7.5>